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보호 영역 밖에 있는 국민에게 2009년부터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바, 국가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산정기준(안 제2조)

1) “가구단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신청인 본인, 배우자, 1촌이내 직계혈족으로 하되,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월평균 총소득의 범위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으로 하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함.

나.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범위(안 제3조)

- 1)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으로 함.
- 2)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재산의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함.
- 3)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취업한 기간”은 통산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함.
- 4) 법 제7조제4항의 “재산의 합계액”은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승용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다.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및 확인방법(안 제6조)

- 1) 직업능력개발 훈련,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사회봉사활동,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을 인정함.
- 2) 각 활동의 확인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라.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에 신고하는 소득의 범위(안 제7조)

- 1)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수급자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신고해야 함.
- 2) 다만,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시간 단위 최저임금에 60시간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등에는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함.

마.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안 제9조)

-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2)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의 지급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은 소멸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 등

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산정기준)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가구단위”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한 사람일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일 것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1촌 이내 직계혈족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가구단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2항의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일 것.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일 것.
3. 재산소득: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일 것.
4. 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④ 제3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호의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일 것
2. 제3호의 “재산의 합계액”: 3억원일 것. 다만,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3. 제4호의 “취업한 기간”: 법 제8조에 따른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통산(通算)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이 경우 취업한 사실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확인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소득 및 재산의 금액이 낮거나 취업의 곤란함이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의 금액, 취업의 곤란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1. 제2조제3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
3.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4. 취업희망 분야와 관련한 학력, 경력 및 자격
5. 구직욕구 및 건강상태
6. 미취학자녀 등 양육이 필요한 자녀의 수
7. 그 밖에 한국어능력, 연령 등 취업의 곤란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
나. 군복무 중인 경우

다. 심신상의 이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4호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의 운영 목적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일 것

3. 법 제7조제3항제5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 수당을 지원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원일 것

4. 법 제7조제3항제6호의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일 것

5. 법 제7조제3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의 합계액”: 다음 각 목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의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해당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를 포함)일 것. 이 경우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가. 일반재산: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나.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다.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라.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 마.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사용연수·배기량·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월평균 총소득”: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제1호 각 목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 정보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3호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자료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관련 자료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에스에이치(SH)공사와 주택임차인이 체결한 주

- 택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관련 자료
7.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 제4조(자료의 제출요구)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확인·조사하거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자료
 2.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의 자료와 다른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

- 제5조(취업활동계획의 수립) ① 법 제1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근로능력과 구직의사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직종 등 일자리의 종류, 희망하는 임금·근로시간·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취업활동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제6조(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및 확인방법) ① 법 제18조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한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중 일경험 습득 및 경력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3. 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취업진로상담, 이력서작성·면접 기법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4.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5.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6.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 및 금융 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7.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고, 구인업체에 방문하여 채용면접에 응시한 경우

8.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9. 중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및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 경우

10.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확인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에 신고하는 소득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영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법 제14조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 해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말한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연도 시간 단위 최저임금에 60시간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8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의 예외)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자 등 그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일 것
 2. 제1호의 사유로 구직촉진수당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수당수급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 지급하는 방법은 구직촉진수당등을 수급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소개된 직업 일자리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직종 등과 현저히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② 법 제26조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는 3회를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5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단서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일부 금액 지급 기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급주기 중에 수급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총 횟수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지급액 중 일부를 지급. 이 경우 일부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 “제3항에 따른 지급중단 횟수에 포함하는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급주기 중에 수급자가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경우를 1회로 산정 제10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 제한 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5장 취업지원의 종료 및 심사·재심사 청구

제11조(재참여 허용기준) ① 법 제29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1

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2조(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운영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3조에 따른 자료·정보의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
2. 법 제9조의 확인·조사를 위한 관련 전산망의 연계 및 자료의 수집·관리·가공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운영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결정·통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유예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에 따른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무

13. 법 제21조에 따른 소득발생 등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에 관한 사무

14. 법 제22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16. 법 제27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17. 법 제28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에 관한 사무

제14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통지 등) 법 제33조에 따라 신청 및 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취업지원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확인·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결정·통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유예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무
7.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사무
8.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0. 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12. 법 제20조에 따른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무
13. 법 제21조에 따른 소득발생 등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에 관한 사무
14. 법 제22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무
16. 법 제27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17. 법 제28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에 관한 사무
18.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에 관한 사무

19. 법 제31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무

20. 법 제3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제1항제5호부터 제8호의 권한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

⑤ 법 제35조제5항제5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 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